



대 법 원
제 2 부
판 결

사 건 2014다44574 손해배상(기)
원고, 피상고인 장경욱

피고, 상고인 대한민국
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나39744 판결
판 결 선 고 2014. 10. 27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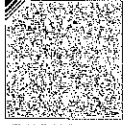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신영철	<u>신영철</u> 
	대법관	이상훈	<u>이상훈</u> 
주심	대법관	김창석	<u>김창석</u> 
	대법관	조희대	<u>조희대</u> 



정본입니다.

2014. 10. 28.

대법원

법원주사보 함정호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